

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[별표 11의2] <신설 2019. 6. 25.>

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(제18조의9 관련)

1. 농업용 트랙터
2. 농업용 동력운반차
3. 콤바인
4. 스피드스프레이어
5. 트레일러(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)
6. 비료살포기
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